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2호 2016. 12. 7.(수)

선	기관의 장
람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공 고】

제2016-1878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2016-187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45

【고 시】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미디어담당관 ☎ 840-2052)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6- 1878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시기구(미래도시사업단) 신설 등 2017년 조직개편을 위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맞춰 기구 명칭·분장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고,
-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는 성장전략사업단의 업무는 기능별로 상시기구로 재편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변동(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

기 관 별		현행	개편	증감	비 고
총 계		○ 5급 정원 : 변동 없음			
분 칭	국·단	3	3	-	• 폐지 : 성장전략사업단(시정발전 연구과, 전략사업과) • 신설 : 미래도시사업단(창조도시과, 정책사업과)
	담당관·과	25	25	-	

기 관 별		현행	개편	증감	비 고
직속기관	기 관	2	2	-	• 기구(과) 명칭 변경 (농정과 → 농정유통과)
	과	6	6	-	

※ 사업소, 읍면동, 인회사무국 기구 변동사항 없음

나. 정원 조정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9조제1항 별표 3) :
998명(총 정원 변동없음)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 : 현행과 같음

구 분	계	일반직·연구직·지도직(99% 이상)							정무직·별정직(1% 이내)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별정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998	958	7	-	7	30	3	27	1	2

○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958	1	5	52	248	284	225	143
개 정	958	1	5	52	249	285	225	141
증 감	-	-	-	-	1	1	-	△2

※ 연구직, 지도직, 정무직, 별정직 정원은 변동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 행	998	541	17	160	52	228
개 정	998	534	17	166	53	228
증 감	-	△7	-	6	1	-

② 주요 정원관리 기관별 · 부서별 정원 조정 세부 내역

정원관리관	부서	기존	변경	증감인원	비고
본청 (증 32명, 감 39명)	기획담당관	22	23	1	· 행정7 +1(시정발전연구과 시정연구단팀 인수)
	시보사민과	19	20	1	· 행정6 +1(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및 민원정책팀 신설) · 자연감소 직렬조정(사무운영8 -1 → 행정9 +1)
	문화관광과	22	21	△1	· 행정·시설7 -1(2018 올해의 관광도시 업무 창조도시과 이관)
	문화재과	21	19	△2	· 학예사 -1, 행정·시설8 -1(세계유산 등재 및 후속 업무 창조도시과 이관)
	교육체육과	16	15	△1	· 행정9 -1(금강 수변 종합계획수립 등 업무 창조도시과 이관)
	환경자원과	47	46	△1	· 운전9 -1(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감원 및 셔틀버스 증차에 따른 복지시설사업소 정원 이관) · 자연감소 직렬조정(사무운영9 -1 → 행정환경9 +1)
	시정발전연구과	18	-	△18	· 한시기구(성장전략사업단) 폐지
	전략사업과	16	-	△16	· 한시기구(성장전략사업단) 폐지
	창도시조과	-	17	17	· 한시기구(미래도시사업단) 설치
	정사업과	-	13	13	· 한시기구(미래도시사업단) 설치
직속기관 (증 7명, 감 1명)	보건과	67	68	1	· 보건·간호8 +1(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증원) ·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조정(보건진료6 -1 → 보건진료7 +1)
	농유통정과	24	23	△1	· 팀 통합에 따른 자연감소 정원 감원(사무운영9 -1)
	농진흥과	17	21	4	· 시정발전연구과 농촌관광팀, 농촌혁신팀 인수에 따른 증원 6명 (행정·농업·시설6 +1, 농촌지도사·행정6 +1, 농촌지도사 +1, 시설7 +1, 행정·농업8·농촌지도사 +1, 사무운영9 +1) · 생활기술팀 기술보급과 이관에 따른 정원 이관 2명 (농촌지도사 -2)
	기보급술과	16	18	2	· 농촌지도사 +2(농촌진흥과 생활기술팀 인수)
사업소 (증 1명)	복지시설사업소	12	13	1	· 운전9 +1(셔틀버스 증차에 따른 환경자원과 정원 인수), 행정·공업·시설9 +1(농정과 자연감원 정원 활용 증원) · 사무운영9 -1(웅진동 자연감소 위생직렬 대체)
읍면동 (증 1명, 감 1명)	웅진동	12	12	-	· 사무운영9 +1(복지시설사업소 정원 인수) · 위생9 -1(자연감소 정원 감원 - 보건과 감염병 대응 인력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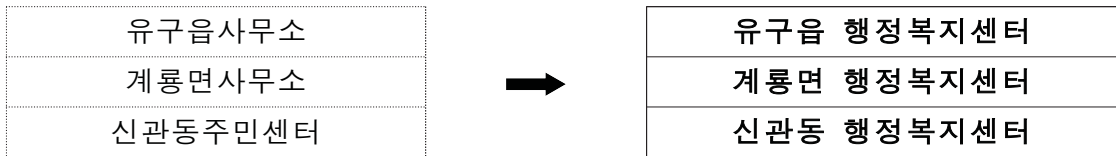
③ 2016년 전직시험 합격자 정원 조정

부 서	정 원		비 고
	조정 전	조정 후	
세 무 과	사무운영9	행정7	
기 경 제 업 과	사무운영9	사회복지6	직렬·직급조정 (기업경제과 사회복지6 ↔ 사회과 행정8)
문 화 시 설 소 사 업 소	기계운영7	행정·공업6	

다. 사무 조정(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1조, 제42조) : 붙임 개정안과 같음

마. 기타사항

- 업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직렬 및 직급조정
- 복지허브화에 따른 읍면동 명칭변경(별표 1, 별표 2)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부서별 작성(별표 4) 및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표(별표 6) 신설
- 다른 규칙의 개정 :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 변경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 2070 / FAX : 041- 840- 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
16. 정책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7. 시정연구단 운영
18. 지역협력사업 예산확보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19. 신규 지역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0. 당면 현안사항 연구 보고

제5조제2항제33호(중전의 제26호) 중 “의회”를 “경영관리, 의회”로, “서울사무소”를 “시정연구, 서울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범 시민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8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9호 및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13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8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정보화 자원관리 및 성과관리

15. 정보시스템 운영 및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제8조제2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7. 지방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1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제8조제2항에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나라 시스템 운영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

21. 행정전산장비 및 주변기기 보급

22.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24. 공공데이터 관리

제13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발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40호를 같은 조 제4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한다.

제24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관광호텔 등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중전의 제20호) 중 “전략사업과”를 “창조도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중전의 제31호) 중 “공원녹지”를 “도시 기반시설, 공원녹지”로 한다.

제29조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성장전략사업단)”을 “(미래도시사업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미래도시사업단장”으로, “시정발전연구과장”을 “창조도시과장”으로,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책사업과장”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창조도시과) 창조도시과의 설치 목적은 세계유산 관광 콘텐츠 개발,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 금강 수변·수상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명품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도시, 세계유산, 도시 재창조 및 도시재생, 금강 르네상스사업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2. 2018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4. 고도보존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5.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고도보존 육
성 지역심의 위원회 운영
7.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
8.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추진
9. 공주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추진
10. 세계유산 (추가)등재에 관한 사항
11. 세계유산 등재 후속대책 및 활용방안 개발에 관한 사항
12. 세계유산기구(OWHC), 세계유산도시협의회, 백제세계유산센터 업무
지원
13.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사업,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 등) 총괄 조정 · 지원 · 추진에
관한 사항
14.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계획 수립 총괄
16. 금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17.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추진
18.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19. 금강 쌍신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20. 고마 물놀이 시설 설치사업 추진
21.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22. 신관공원 음악분수 설치사업 추진
23. 그 밖에 관광도시, 세계유산, 도시 재창조 및 도시재생, 금강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사항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정책사업과) 정책사업과의 설치 목적은 역세권 개발, 복합문화센터 건립, 특화단지 조성, 도자문화 등 시정 주요 전략사업을 공주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개발·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세권 개발, 복합문화센터 건립, 특화단지 조성, 도자문화 육성 종합 기획·조정
2.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총괄
3. 역세권 개발 사업(도시계획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4. 역세권 관련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5.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인가에 관한 사항
6.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주역 테마역 조성사업 추진
8. 공주역-세종특별자치시 간 BRT 노선 신설 추진(공주터미널-세종특별자치시 간 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포함한다.)
9.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에 관한 사항
10. 충청 산업문화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

11.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제2금강교 및 공주IC 연결도로 개설 추진
13.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14. 구 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다만, 활용방안 수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며, 부지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계획 및 관리계획은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한다.)
15. 역사인물관 설치사업 추진
16.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 총괄관리와 행정지원
17. 복합연수단지 지역 주민과 개발 협의체 구성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18. 복합연수단지 사업대상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
19. 복합연수단지 도시(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업 실시계획 종합 수립 지원
20. 복합연수단지내 기관 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1. 복합연수단지내 잔여 부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22. 복합연수단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23.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 토지관리 및 주민 편의시설과 시설이용자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4.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전원단지 및 귀농귀촌인 모범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26. Again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
27.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 사업 추진

28.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 정비사업 추진
29. 지역 공예마을 육성사업 추진
30. 철화분청 산업화 방안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
31. 이삼평 공원에 관한 사항
32. 도자문화 축제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역세권 개발, 복합문화센터 건립, 특화단지 조성, 도자문화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 중 “농정과” 를 “농정유통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정과장” 을 “농정유통과장” 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농정과)” 를 “(농정유통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 을 “농정유통” 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촌체험사업 중 3농혁신과 연계된 사업에 관한 사항

제41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마을단위 추진 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마을단위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마을별 생산품의 브랜드화
18. 1사(1교)1촌 자매결연 및 도농 교류 추진
19.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0.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 제외)
21.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농촌체험사업과 관련된 농촌 6차산업화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사회적 기업 제외)
23. 농촌마을 리더 및 체험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24. 녹색농촌 휴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5. 농촌문화 체험사업 추진
26. 도시민 개별농가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27. 농촌체험 연구모임 육성에 관한 사항
28. 농촌체험학습 고객 유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29. 마을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0. 농촌체험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31.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귀농귀촌인 임시거주(빈집) 편의시설 제공사업 추진

제4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생활개선사업 추진
13.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저장 지도
14. 향토전통음식 개발 육성

제49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농정과” 를 “농정유통과” 로 한다.

②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 을 “농정유통과장” 으로 한다.

③ 공주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정과장” 을 “농정유통과장” 으로 한다.

④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과장” 을 “농정유통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정과장” 을 “농정유통과장” 으로 하고, “농정과” 는 “농정

유통과” 로 한다.

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정과장.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 을 “농정유통과장.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중 “농정과장” 을 “농정유통과장” 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47조 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월송동주민센터	월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부읍·면장의 직급 (제48조 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신평면사무소	신평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별표3)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3)	534(1)	17	166	53	228(2)	21(1)	131	76(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58(3)	525(1)	17	135	53	228(2)	21(1)	131	76(1)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5급 소계	52	26	2	5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지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7	13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농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8		8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5					5	1		4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9	149	3	39	14	44	4	27	13
지방행정주사	72	52	2		5	13	1	7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6	6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복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진료주사	13			13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6	5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4			1	11	1	6	4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8	5			3				
지방행정·농업주사	10	2		4		4		2	2
지방행정·복지주사	4	4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30	27	1		1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4					4	1	2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농업·복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3	4		1	1	7	1	6	
지방행정·복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7급 소계	285	175	5	32	13	60	5	34	21
지방행정주사보	73	54	3	1	3	12	2	3	7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3	2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7	5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2			2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5		1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2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7	5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2	17	1			4	1	2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3	2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8급 소계	225	113	3	43	6	60	5	37	18
지방행정서기	43	23	3		1	16	2	7	7
지방세무서기	10	9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3	4				9	1	7	1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6	2		3	1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7	10			1	6		6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3	9				4		3	1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7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2	2							
지방행정·시설서기	21	16				5		3	2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간호서기	8			8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보건·환경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운전서기	7	7							
지방위생서기	3	1				2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2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9급 소계	141(3)	58(1)	3	15	17	48(2)	6(1)	24	18(1)
지방행정서기보	26(3)	9(1)		1		16(2)	2(1)	9	5(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3				7	2	1	4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8	1				7		2	5
지방행정·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3				3				
지방행정·농업서기보	5					5		5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3	3							
지방행정·시설서기보	8	6		1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공업·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4	18	1	2	3				
지방위생서기보	7	1		1	1	4		2	2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9	3		1	4	1			1
연구직 계	7	6		1					
지방학예연구사	4	4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2			2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0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별표 4]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직무분야
		소 계	시 정 담 당 관	미 디 어 담 당 관	문 화 관 광 과	교 육 체 육 과	기 업 경 제 과	도 시 정 책 과		소 계	건 강 과	농 정 유 통 과	축 산 과	소 계	문 화 시 설 사 업 소		
총 계	12	7	1	1	2	1	1	1	1	3	1	1	1	1	1		
일반직 소계	12	7	1	1	2	1	1	1	1	3	1	1	1	1	1		
5급 소계	2	1						1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1									기업유치 1
지방의무사무관	1									1	1						의료분야 1
6급 소계	4	2		1	1					2		1	1				
지방행정주사	2	2		1	1												시정홍보 1 관광사업 1
지방행정·농업주사	2									2		1	1				농산유통지원 1 한우브랜드육성 1
7급 소계	4	3			1	1		1						1	1		
지방행정주사보	3	2			1	1								1	1		축제 1 평생교육사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1									공공디자인 1
8급 소계	1	1	1														
지방행정서기	1	1	1														외국어 통역 1
9급 소계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속기사 1

[별표 6]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

(제49조제3항 관련)

(단위: 명)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비고
		소계	시 민 봉사과				소계	옥룡동	신관동	
총 계	5	3	3	-	-	-	2	1	1	
9급 소계	5	3	3	-	-	-	2	1	1	
지방행정서기보	5	3	3	-	-	-	2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획담당관) ① (생략)</p> <p>② 기획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 미래비전 설정과 시정 종합 기획,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등에 있고,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14. (생략)</p> <p><u><신설></u></p> <p>15. (생략)</p> <p><u><신설></u></p> <p>16. (생략)</p> <p><u><신설></u></p> <p>17. (생략)</p> <p><u><신설></u></p> <p>18. (생략)</p> <p><u><신설></u></p> <p>19. (생략)</p> <p><u><신설></u></p> <p>20. (생략)</p>	<p>제5조(기획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u>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u></p> <p>21. (현행 제14호와 같음)</p> <p>15. <u>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u></p> <p>22. (현행 제15호와 같음)</p> <p>16. <u>정책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u></p> <p>23. (현행 제16호와 같음)</p> <p>17. <u>시정연구단 운영</u></p> <p>24. (현행 제17호와 같음)</p> <p>18. <u>지역협력사업 예산확보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u></p> <p>25. (현행 제18호와 같음)</p> <p>19. <u>신규 지역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u></p> <p>26. (현행 제19호와 같음)</p> <p>20. <u>당면 현안사항 연구 보고</u></p> <p>27. (현행 제20호와 같음)</p>

21. (생략)

22. (생략)

23. (생략)

24. (생략)

25. (생략)

26. 그 밖에 기획조정, 예산, 의회,
법무, 규제개혁, 서울사무소 업무
에 관한 사항

제6조(시정담당관) ① (생략)

② 시정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시
행정의 종합 조정, 시민 여론을 수
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담
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서
장을 보좌한다.

1. ~ 22. (생략)

23.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4. ~ 30. (생략)

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생략)

② 미디어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온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
정 홍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
고, 각종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지
역 정보화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

28. (현행 제21호와 같음)

29. (현행 제22호와 같음)

30. (현행 제23호와 같음)

31. (현행 제24호와 같음)

32. (현행 제25호와 같음)

33. ----- 경영
관리, 의회----- 시정연구, 서
울사무소 -----

제6조(시정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2. (현행과 같음)

23. 범 시민대책위원회 운영에 관
한 사항

24. ~ 30. (현행과 같음)

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미디어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 1. ~ 10. (생략)
- 11. 정보화 및 전산운영 계획 수립

<신설>

- 12. (생략)
- 13. 전산화 대상 업무 연구 개발
- 14. 전산실 운영 및 우수 프로그램 보급
- 15.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급 및 각종 서버 구축·관리
- 16. (생략)
- 17. 전자결재시스템 관리·운영
- 18. PC 및 주변기기 보급·관리

<신설>

- 19. (생략)

<신설>

- 20. (생략)

<신설>

- 21. (생략)

<신설>

- 22. (생략)
- 23. (생략)

-----.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1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삭제>

- 14. 정보화 자원관리 및 성과관리
- 15. 정보시스템 운영 및 우수정보 시스템 보급
- 16. (현행과 같음)
- 17. 지방행정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 1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19. 온-나라 시스템 운영

- 23. (현행 제19호와 같음)
-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
- 25. (현행 제20호와 같음)
- 21. 행정전산장비 및 주변기기 보급

26. (현행 제21호와 같음)

- 22.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 27. (현행 제22호와 같음)
- 28. (현행 제23호와 같음)

24. (생략)

<신설>

25. (생략)

제13조(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의 설치목적은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체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신설>

17. (생략)

제17조(문화재과) 문화재과의 설치 목적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및 전승에 기여하고 문화유산의 공개 및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사항

15. (생략)

16. (생략)

17. (생략)

29. (현행 제24호와 같음)

24. 공공데이터 관리

30. (현행 제25호와 같음)

제13조(시민봉사과) -----

-----.

1. ~ 16. (현행과 같음)

17.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제17조(문화재과) -----

-----.

1. ~ 13.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 제15호와 같음)

15. (현행 제16호와 같음)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18. (생략)

19. (생략)

20. (생략)

21. (생략)

22. (생략)

제21조(기업경제과) 기업경제과의
설치 목적은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창업, 유치,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
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
로 균형 있는 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9. (생략)

<신설>

40. (생략)

제22조(건설과) 건설과의 설치 목적
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편리
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유지
· 관리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건
설행정 구현에 있으며, 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7. (현행 제18호와 같음)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19. (현행 제20호와 같음)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제21조(기업경제과) -----

-----.

1. ~ 39. (현행과 같음)

40.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1. (현행 제40호와 같음)

제22조(건설과)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
법」에 관한 사항

- 13. (생략)
- 14. (생략)
- 15. (생략)
- 16. (생략)
- 17. (생략)
- 18. (생략)
- 19. (생략)
- 20. (생략)
- 21. (생략)
- 22. (생략)
- 23. (생략)
- 24. (생략)
- 25. (생략)
- 26. (생략)
- 27. (생략)
- 28. (생략)
- 29. (생략)

제24조(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의
설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 국토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
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를 증

<삭제>

- 12. (현행 제13호와 같음)
- 13. (현행 제14호와 같음)
- 14. (현행 제15호와 같음)
- 15. (현행 제16호와 같음)
-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 17. (현행 제18호와 같음)
-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 19. (현행 제20호와 같음)
-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 23. (현행 제24호와 같음)
- 24. (현행 제25호와 같음)
- 25. (현행 제26호와 같음)
- 26. (현행 제27호와 같음)
- 27. (현행 제28호와 같음)
- 28. (현행 제29호와 같음)

제24조(도시정책과) -----

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호남고속철도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호남고속철도와 관련된 역세권개발 사업(도시계획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생략)

17. (생략)

18. (생략)

19. (생략)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 총괄(다만,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한다.)

21. (생략)

22. (생략)

23. (생략)

24. (생략)

25. (생략)

26. (생략)

27. (생략)

28.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관광호텔 등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제>

15. (현행 제16호와 같음)

16. (현행 제17호와 같음)

17. (현행 제18호와 같음)

18. (현행 제19호와 같음)

19.-----

----- 창조도시과 -----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23. (현행 제24호와 같음)

24. (현행 제25호와 같음)

25. (현행 제26호와 같음)

26. (현행 제27호와 같음)

27. (현행 제28호와 같음)

29. (생략)

30. (생략)

31. 그 밖에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개발,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29조(토지과) 토지과의 설치 목적은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관리와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확한 과세자료 산출 및 고품격 지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2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발급에 관한 사항

22. (생략)

23. (생략)

24. (생략)

제30조(성장전략사업단) 성장전략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시정발전연구과) 시정발전연구과의 설치 목적은 주변 지역 간

28. (현행 제29호와 같음)

29. (현행 제30호와 같음)

30. -----
----- 도시 기반시설, 공원
녹지-----

제29조(토지과) -----

1. ~ 20. (현행과 같음)

<삭제>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23. (현행 제24호와 같음)

제30조(미래도시사업단) 미래도시사업단장-----
----- 창조도시과
장-----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정책사업과장-----

제31조(창조도시과) 창조도시과의
설치 목적은 세계유산 관광 콘텐츠

상생발전,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혁신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등 시정 주요 전략 정책을 개발하여 공주시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개발, 시정연구, 농촌관광, 농촌혁신, 귀농귀촌에 관한 종합 기획 · 조정
2.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
4. 정책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연구단 운영
6. 세종특별자치시와 다원적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역협력 및 지역공동화방지대책 종합 추진 관리
8. 지역협력사업 예산확보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9. 신규 지역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0. 당면 현안사항 연구 보고
11. 농촌체험사업 중 3농혁신과 연계된 사업에 관한 사항
12. 마을단위 추진 조직 관리 · 운

츠 개발,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 금강 수변·수상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명품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도시, 세계유산, 도시 재창조 및 도시재생, 금강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종합 기획 · 조정
2. 2018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4. 고도보존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5.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추진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고도보존 육성 지역심의 위원회 운영
7.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
8.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사업 추진
9. 공주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추진
10. 세계유산 (추가)등재에 관한

영에 관한 사항

- 13. 마을단위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14. 지역별·마을별 생산품의 브랜드화
- 15. 1사(1교)1촌 자매결연 및 도농 교류 추진
- 16.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 17.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 제외)
- 18.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9. 농촌체험사업과 관련된 농촌 6차산업화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사회적 기업 제외)
- 20. 농촌마을 리더 및 체험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 21. 녹색농촌 휴양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22. 농촌문화 체험사업 추진
- 23. 도시민 개별농가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24. 농촌체험 연구모임 육성에 관한 사항

사항

- 11. 세계유산 등재 후속대책 및 활용방안 개발에 관한 사항
- 12. 세계유산기구(OWHC), 세계유산도시협의회 및 백제세계유산센터 업무 지원
- 13.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사업,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 등) 총괄 조정·지원·추진에 관한 사항
- 14.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15. 금강 수변 종합관광레저 이용 계획 수립 총괄
- 16. 금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
- 17.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추진
- 18.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 19. 금강 쌍신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 20. 고마 물놀이 시설 설치사업 추진
- 21.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 22. 신관공원 음악분수 설치사업 추진
- 23. 그 밖에 관광도시, 세계유산,

25. 농촌체험학습 고객 유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26. 마을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27. 농촌체험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8.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29. 전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정책개발,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 밤 연구에 관한 사항

제32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의 설치 목적은 사곡면 계실리 지구(이하 “복합연수단지”라 한다.) 국가·공공기관 및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이하 “도기관”이라 한다.)의 이전 지원과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 및 도자공예 문화자원 육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연수단지 조성 및 도기관 이전 사업 총괄관리와 행정지원

도시 재창조 및 도시재생, 금강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사항

제32조(정책사업과) 정책사업과의 설치 목적은 역세권 개발, 복합문화센터 건립, 특화단지 조성, 도자문화 등 시정 주요 전략사업을 공주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개발·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세권 개발, 복합문화센터 건립, 특화단지 조성, 도자문화 육성 종합 기획·조정

2.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총괄

3. 역세권 개발 사업(도시계획분야) 추진에 관한 사항

- | | |
|--|--|
| 2. <u>지역 주민과 개발 협의체 구성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u> | 4. <u>역세권 관련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u> |
| 3. <u>사업대상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 및 민원대책에 관한 사항</u> | 5. <u>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인가에 관한 사항</u> |
| 4. <u>이전시설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방안 마련</u> | 6. <u>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u> |
| 5. <u>도기관의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u> | 7. <u>공주역 테마역 조성사업 추진</u> |
| 6. <u>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 도시(지구단위)계획결정, 사업실시계획 종합 수립 지원</u> | 8. <u>공주역-세종특별자치시 간 BR T 노선 신설 추진(공주터미널-세종특별자치시 간 급행버스 노선 신설을 포함한다.)</u> |
| 7. <u>복합연수단지내 기관이전 및 도기관 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u> | 9. <u>「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에 관한 사항</u> |
| 8. <u>복합연수단지내 잔여 부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u> | 10. <u>충청 산업문화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u> |
| 9. <u>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의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u> | 11. <u>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
| 10. <u>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 이전</u> | 12. <u>제2금강교 및 공주IC 연결도로 개설 추진</u> |
| | 13. <u>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u> |
| | 14. <u>구 공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u> |

- | | |
|--|---|
| <p><u>주변지역 토지관리 및 주민 편의 시설과 시설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u></p> | <p><u>추진에 관한 사항(다만, 활용방안 수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며, 부지에 대한 장기적인 활용계획 및 관리계획은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한다.)</u></p> |
| <p><u>11. 복합연수단지 및 도기관 이전 지역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u>
<u>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 <p><u>15. 역사인물관 설치사업 추진</u></p> |
| <p><u>12.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사업, 구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 제민천 따라 흐르는 문화골목 만들기 사업 등) 총괄 조정 · 지원 · 추진에 관한 사항</u></p> | <p><u>16. 복합연수단지 조성사업 총괄관리와 행정지원</u>
<u>17. 복합연수단지 지역 주민과 개발 협의체 구성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u></p> |
| <p><u>13.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u></p> | <p><u>18. 복합연수단지 사업대상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 및 민원 대책에 관한 사항</u></p> |
| <p><u>14.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u></p> | <p><u>19. 복합연수단지 도시(지구단위) 계획 결정, 사업 실시계획 종합 수립 지원</u></p> |
| <p><u>15. 고도보존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u></p> | <p><u>20. 복합연수단지내 기관 이전을 위한 각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지원에 관한 사항</u></p> |
| <p><u>16.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 지원사업 추진</u></p> | <p><u>21. 복합연수단지내 잔여 부지 공</u></p> |
| <p><u>1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 및 고도</u></p> | |

보존 육성 지역심의 위원회 운영
18.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운영 및 지원
19. 공주철화분청도자타운 조성사업 추진
20.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추진
21. 계룡산 도예촌 이미지개선사업 추진
22.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23. 이삼평공원에 관한 사항
24. 도자문화축제에 관한 사항
25. 호남고속철도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다만, 도시계획분야는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한다.)
26. 호남고속철도와 관련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총괄
27. 그 밖에 복합연수단지 조성 및 도기관 이전, 도시재생, 고도육성, 도자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22. 복합연수단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23.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 토지관리 및 주민 편의시설과 시설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24. 복합연수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5. 전원단지 및 귀농귀촌인 모범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26. Again 유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
27. 계룡산 도예촌 활성화 사업 추진
28.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 정비사업 추진
29. 지역 공예마을 육성사업 추진
30. 철화분청 산업화 방안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 수립
31. 이삼평 공원에 관한 사항
32. 도자문화 축제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역세권 개발, 복합문화 센터 건립, 특화단지 조성, 도자 문화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38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9조(농정과) 농정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7. (생략)

제41조(농촌진흥과) ① 농촌진흥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

제38조(하부조직) ① -----

----- 농정유통과 -----
-----.

② 농정유통과장-----

-----.

제39조(농정유통과) 농정유통-----

-----.

1. ~ 37. (현행과 같음)

제41조(농촌진흥과) ① -----

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공주 밤의 다양한 활용법을 연구 개발하여 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생활개선사업 추진

12.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및 농산물 가공·저장 지도

13. 향토전통음식 개발 육성

14. (생략)

15. (생략)

1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7. (생략)

<신설>

18. (생략)

<신설>

1. ~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1. (현행 제14호와 같음)

12. (현행 제15호와 같음)

13. (현행 제16호와 같음)

14. 농촌체험사업 중 3농혁신과 연계된 사업에 관한 사항

15. 마을단위 추진 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마을단위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마을별 생산품의 브랜드화

32. (현행 제17호와 같음)

18. 1사(1교)1촌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추진

33. (현행 제18호와 같음)

19.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9. (생략)

<신설>

20. (생략)

<신설>

2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34.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정주권 개발에 관한 사항 제외)

35. (현행 제20호와 같음)

21.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6. (현행 제21호와 같음)

22. 농촌체험사업과 관련된 농촌 6차산업화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사회적 기업 제외)

23. 농촌마을 리더 및 체험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24. 녹색농촌 휴양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5. 농촌문화 체험사업 추진

26. 도시민 개별농가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27. 농촌체험 연구모임 육성에 관한 사항

28. 농촌체험학습 고객 유치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29. 마을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0. 농촌체험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31.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귀농귀

③ (생략)

과 같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공주시 공고 제2016- 1879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존치 필요성 상실

2. 주요내용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2552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인사담당관실
(전화 : 041- 840- 2076 / FAX : 041- 840- 2307 / E- mail : sea952@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공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